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366
----------	-------

발의년월일 : 2020. 4. 16.

발 의 자 : 이기환 의원 외 11명

1. 제정이유

- 화재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5. 예산수반사항 : 별첨(비용추계서)

5. 입법예고 결과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참고사항 : 별첨(관련부서 검토의견서)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안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시청사, 보건소 등)
2. 공공기관
3. 의료기관
4. 보육시설
5. 복지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유관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안산시의회
입 시 의 원	시 의 원	이기환 대표발의 (행정 3576)
안 자		